

	<b>보도자료</b>			
		<b>보도</b>	<b>2020.7.28.(화) 10:00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	<b>담 당 자</b>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621)
		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25)
			김 영 준 사무관 (02-2100-2696)

**제 목 :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**

□ 데이터 3법\*의 하나인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신용정보법')」의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(7.28.)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

\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법」, 「정보통신망법」

○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,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

□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데이터 3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

○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의 절차 및 결합시 준수사항

○ 본인신용정보관리업(이하 '마이데이터'), 비금융 전문신용평가업 등 신규 신용정보업자의 진입요건, 행위규칙과

○ 정보활용·관리 상시평가제(국정과제 6-5),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권 정보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등을 규율

□ 동 개정 시행령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**8.5.부터 시행**될 예정

- ⇒
- ① 데이터 수집·가공·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촉진
  - ② 마이데이터 등 금융 新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
  - ③ 금융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

# 1

## 시행령 주요내용

- ①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「신용정보법」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.

### < 데이터 결합 절차 >

절차	주체	의무
결합의뢰	결합의뢰기관	①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신청
		②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(예:전화번호)은 <b>결합키</b> (결합을 위해 활용하는 키)로 대체 * 결합키의 생성은 금융위가 정한 기준(신용정보업 감독 규정)에 맞추어 의뢰기관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
		③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<b>가명·익명처리</b>
		④ <b>암호화</b>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
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	전문기관	① 데이터 결합 후 결합에 사용된 <b>결합키는 삭제 또는 대체키로 전환</b>
		② 결합데이터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<b>적정성 평가</b> 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만 전달
		③ 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<b>결합데이터 및 원본데이터 즉각 삭제</b> * 결합의뢰기관이 요청할 경우, 전문기관 내에서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
결합 이후	전문기관	① 결합 관련 사항 기록·관리
		② 결합 관련 기록은 연 1회 금융위 보고

- ②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·물적 설비와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.

- 데이터 전문기관은 엄격한 시설·설비·인력 요건을 충족하고,
- 전문기관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과 서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.

③ 신용정보업(CB:Credit Bureau)의 진입 규제가 완화됩니다.

-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된 만큼,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하였습니다.

< 진입규제 개편 >

	인가단위	최소 자본금(法)	전문 인력(명)	
기존	신용조회업(CB업 구분X)	50억원	10명	
개선	개인CB	50억원	10명	
	비금융전문CB	5억원/20억원*	2명/5명	
	개인사업자CB	50억원	10명	
	기업CB	기업등급제공	20억원	10명
		기술신용평가	20억원	10명
		정보조회업	5억원	2명

\* (5억원) 비정형 데이터 (20억원) 대량의 정형 데이터

-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하여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-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·핀테크·빅테크 기업·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·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< 전문인력 범위 개편 >

기존	공인회계사,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(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 포함)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개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인회계사</li> <li>2. 기술사, 기술거래사, 변리사</li> <li>3.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</li> <li>4.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평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</li> <li>5.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</li> <li>6.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(정보분석 및 정보 기획업무 등을 포함)에 종사하였던 사람</li> <li>7.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

- 신용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회사 행위규칙\*을 신설했습니다.

\* 예 : ①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·서비스 구매·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**차별적 행위 금지**  
 ②의뢰자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·약속하는 등 **등급쇼핑 유발행위 금지**

4 마이데이터(MyData)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.

-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\*을 신설하였습니다.

\* 예 :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,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금지

- 역량있는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법령상 전문인력 제한을 두지 않고, 비금융업무는 폭넓은 겸업을 허용했습니다.

5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\*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\*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(法 §33-2)

-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, 전기통신사업자,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, 마이데이터 사업자,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,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, 4대 보험료 납부정보, 통신료 납부정보 등입니다.

※ <참고>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보유 정보도 공유 가능한지?

- 「신용정보법」은 금융거래정보 등 '신용정보'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님
- 다만,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

## ⑥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내실있게 개선됩니다.

-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·보호실태를 점검하고, 점검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(금융보안원에 위탁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①금융회사 자체 평가 → ②전문기관 점검→ ③금융당국 감사의 3단계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-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\*도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.
  - \*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(法 §36-2)
- 자동화된 신용평가,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해 설명 및 정정 청구를 요구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집니다.

## 2

### 향후 일정

- 신용정보법 및 동 법 시행령은 '20.8.5일부터 시행됩니다.
  - \* 동 법 고시(신용정보업 감독규정), 시행규칙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)도 8.5일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·시행 예정
-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「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」, 「금융분야 가명처리·익명처리 안내서」도 8월 중 정식 배포할 예정입니다.
-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법 시행 이후 빠르게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(금융보안원, 신용정보원)하여 데이터 결합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겠습니다.
- 마이데이터,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-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·마이데이터·AI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.

◆ ‘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’를 만들고, 청년층을 위한 **양질의 일자리** 창출을 위한 **디지털 뉴딜**의 토대가 마련

① 마이데이터,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 출현, 데이터 수집·가공·결합 활성화 등을 통해 **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**

\* 미국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고용인원 : 1.3만명 (‘17년 기준)

② 비금융전문CB,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,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\*되며 **금융접근성 제고**

\*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,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**1,100만명의 청년·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,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**

③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**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** 등 금융혁신 제고

※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은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

- (ICT+금융정보) 핀테크,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 혁신
- (위치정보+제조업 정보) 자율주행차, 스마트공장, 사물인터넷 등
- (보험정보+바이오 정보)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

○ 데이터 분야(MyData)와 결제분야(Open Banking)이 결합되어 혁신 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

④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**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가능**

○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, 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**알고 동의하고, 주도적으로 관리**할 수 있게 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